8. 수해 피해 복지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

□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 및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□ 복지시설 피해 현황 ('22. 8. 10. 18시 기준)
 - 피해 발생 복지시설 : 총 126개소

구 분	지역주민 시설 (종합사회복지관)	노인 시설	장애인 시설	노숙인 시설
126개소	53개소	23개소	44개소	6개소

- 피해내용: 침수(건물·기계·집기류), 누수(천정·벽면), 외벽 붕괴 등
- 조치사항
 - 임시조치 : 배수 작업, 누수 지점 물받이 설치, 위험장소 출입통제 등
 - 단기조치 : 시설 운영비, 공동모금회 재원 활용 소규모 기능보강 실시

□ 예비비 사용 금액 및 사유

- 지원대상 : 총 16개소, 1,343백만원
 - 피해 규모가 크고, 복구가 시급하며, 기존 재원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복지시설

구 분	지역주민 시설	장애인 시설					
	종합사회복지관	거주시설	주간보호시설	복지관	보호작업장	기타*	
16개소	7개소	1개소	2개소	2개소	1개소	3개소	
1,343백만원	579백만원	70백만원	63백만원	537백만원	62백만원	32백만원	

- ※ 기타(3) :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,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1
- 재난상황임을 고려 ①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면제 ② 구비를 매칭하는 일반적인 기능보강 사업과는 달리 시비 100% 지원하여 신속 지원

□ 추진결과

- 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 수립 : '22.9.13.
- 예비비 교부 및 지출 : '22.9.14. ~ ※ 연내 복구공사 및 지출 완료 예정